

대구지방법원 2021. 12. 10 선고 2020가단11114 판결 [토지인도및건물철거이행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경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

변 론 종 결 2021. 10. 1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대구 동구 C 대 90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5㎡
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(ㄴ)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대구 동구 D 대 10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7,4,5,6,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4㎡
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(ㄹ)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 장

가. 원고의 주장

- 1) 원고는 대구 동구 C 대 905㎡ 및 위 D 대 109㎡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위 E 토지(이하, 원고와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언급할 때 지번으로만 표시한다)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.
- 2) 피고는 E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과정에서,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5㎡ 토지{이하, (ㄴ)부분 토지라고만 한다}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였고, 위 D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,4,5,6,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4㎡ 토지{이하, (ㄹ)부분 토지라고만 한다}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였다.
- 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(ㄴ)부분과 (ㄹ)부분 토지 지상의 각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1) 시효취득 주장

피고는 1975. 1. 31.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(ㄴ)부분과 (ㄹ)부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기간 경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.

2) 권리남용 주장

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토지의 면적이 아주 적고,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로 이익이 없는 반면에 만약에 담장을 철거한다면 피고의 E 토지 지상 건물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피고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.

그리고 피고는 오로지 피해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따름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.

2. 판 단

가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이 사건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(ㄴ)부분과 (ㄹ)부분 토지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가. 대구 동구 C 대 90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5㎡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, (ㄴ)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 나. 대구 동구 D 대 10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7,4,5,6,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4㎡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, (ㄹ)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가 위 (ㄴ), (ㄹ)부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1995. 1. 31. 이후 원고가 C와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취득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

을제1호증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등만으로 원고의 (ㄴ), (ㄹ)부분 토지 인도 및 그 지상의 담장철거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권리행사라거나,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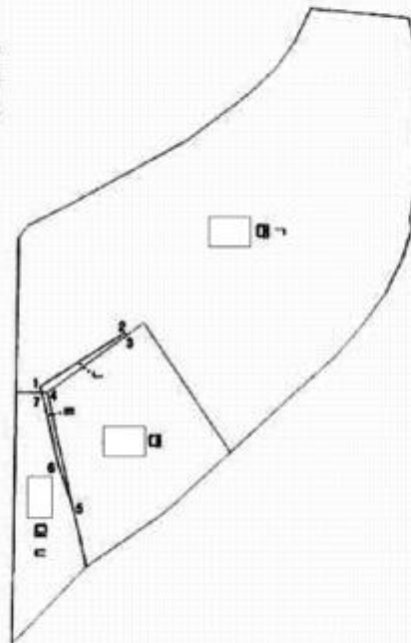
판사 신종화

감 정 도

대구광역시 동구 .

현황 표시

별 기	명 칭
	외곽인 지물선 (현 담장선)



지 번	연 결 번 호	연 적 (㎡)	비 고
	ㄴ	1,2,3,4,7,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	5
	≡	7,4,5,6,7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	4

